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및 장소 : 2023. 10. 12. 목요일 20:00 ~ 20:30

온라인 Zoom 화상 회의

□ 회의 소집 통보일

: 2023. 10. 04. 수요일

□ 참석인원 : 8명

의장 : 고훈경

부의장 : 유성모

평의원 : 윤선아, 김용호, 조영신, 문소영, 박지희, 장호갑

불참 의원: 3명 - 김명진, 권효숙, 최문정

회의 내용

1. 회의안건

가. 학칙개정(안) 심의

나.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2. 회의 진행 내용

가. 학칙개정(안) 심의

사회자 : 바쁜 시간 중에 오늘 2023년 4차 대학원 평의원회에 참석해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기획팀장 김용호입니다.

의장 : 안녕하십니까(안부 인사 진행).

사회자 : 오늘 대학평의원회에서는 본교 「학칙」 제3조(학위과정의 설치)에 대한 사항 중 현재 시행이 중단된 석박사통합과정 폐지의 건(관련 제24조, 제26조, 제37조, 제46조, 서식 제3호 개정)에 대한 학칙 개정과 법인 개방이사 선임을 위한 개방이사추천위원 회 위원 2인을 추천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기획팀 : 먼저 학칙 개정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칙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 표를 화면에 띄우고(자료는 사전 배부) 주요 사항을 설명하다.

현 행	개 정 안
<p>제3조(학위과정의 설치) ① 본교에는 석사 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 박사학위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 통합된 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하며, 석사과정, 박사과정, 통합과정을 합하여 “각 학위과정”이라 한다)을 둔다.</p> <p>② (생략)</p>	<p>제3조(학위과정의 설치) ① ----- ----- -----(이하 “박사과정”이라 하며,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합하여 “각 학위과정”이라 한다)을 둔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4조(수업연한·재학연한) ① 학위과정별 최소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석사과정 : 2년 이상 2. 통합과정 : 4년 이상 3. 박사과정 : 3년 이상 <p>② (생략)</p> <p>③ (생략)</p>	<p>제24조(수업연한·재학연한) ① ----- ----- 1. ----- 2. 삭제<2023. 9. 00> 3.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p>
<p>제26조(입학자격) ①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 학사학위취득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p>	<p>제26조(입학자격) ① 석사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 ----- -----</p>

대표 간서명					
의원	김영수	의원	김민수	의원	윤선아

<p>한다.</p> <p>② (생략)</p> <p>제37조(휴학 및 제적) ①~② (생략)</p> <p>③ 휴학기간은 한 학기를 단위로 하되, 그 기간은 모두 합하여 석사과정은 1년, 박사과정과 통합과정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연속 휴학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p> <p>제46조(수료인정 및 이수학점) ① 각 과정을 수료는데 필요한 최저학점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석사과정 : 27학점 2. 통합과정 : 66학점 3. 박사과정 : 39학점 <p>②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에서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정해진 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 각각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통합과정에서 2년이상 등록하고, 석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 석사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며, 4년 이상 등록하고, 박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 박사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7조(휴학 및 제적)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박사과정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u> -----</p> <p>제46조(수료인정 및 이수학점) ① 각 과정을 수료하는데 필요한 최저학점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삭제<2023. 9. 00> 3. ----- <p>② <u>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에서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정해진 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 각각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u></p>
<p><서식 제3호> 석·박사학위통합과정 학위기부증(2023. 9. 00)</p>	<p><삭제> 2023. 9. 00</p>

부칙(2023. 9. 00)

가.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미졸업 석·박사통합과정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이 적용되는 시점 이전까지 졸업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의 졸업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표 간서명					
의원	2023. 9. 00	의원	2023. 9. 00	의원	2023. 9. 00

의장 : 기획팀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주십시오.

윤선아 : 석박사 통합과정은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기에 통합과정 학생이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유지가 되면 박사과정 인원모집에도 차질을 줄 수 있으므로, 석박사통합과정을 폐지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동의합니다.

의장 : 기획팀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주십시오.

의원일동 : (자료를 확인하다) 이견이 없음을 말하다.

의장 : 학칙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나.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사회자 : 다음 안건은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건입니다.
정관 제18조의 4(개방이사의 선임), 제18조의 5(추천위원회)에 근거하여
본교 대학평의원회에서는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위원 2인을' 추천해야 합니다.
순서는 추천과 재청, 전체 의결을 거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 위원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아 : 교학처장님인 신혜숙 교수님을 추천합니다.

조영신 : 재청합니다.

의원일동 : 이견 없음을 말하다.

유성모 : 통합헬스케어 학과장이신 양현정 교수님을 추천합니다.

문소영 : 재청합니다.

대표 간서명					
의원	윤선아	의원	신혜숙	의원	유성모

의원일동 : 이견 없음을 말하다.

의장 : 정원 2인에 2분 교수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추천되었으니, 추천위원회 위원은 신혜숙 교수와 양현정 교수로 하겠습니다.
다른 안건이 없으므로 본 평의원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장 : 마무리 인사 . 끝.

2023. 10. 12.

대학평의원회 의장 고 춘 경

부의장 유 성 모

평의원 윤 선 아

평의원 조 영 신

평의원 김 용 호

평의원 문 소 영

평의원 장 호 갑

평의원 박 지 희

대표 간서명

의원		의원		의원	
----	--	----	--	----	--